

## 04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

누구든지 미성년자(19세 미만)에게 체험·교육·시험·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(사체를 포함한다)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하여서는 안됩니다.

### 예외

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으로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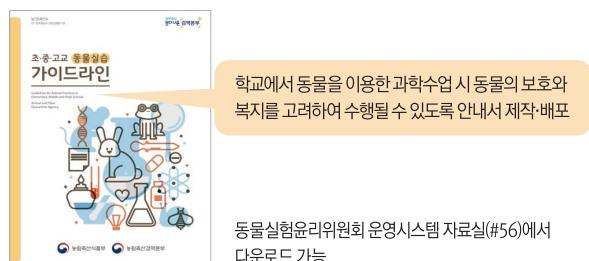
- ①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- ②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
-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

\*관련 규정 : 「동물보호법」 제50조(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), 「동물보호법」 시행규칙 제30조(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)

### 동물해부실습 대체 실감형 콘텐츠



한국교육학술정보원 edunet.net에서 활용 가능



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자료실(#56)에서 다운로드 가능

## 05 동물실험윤리위원회(IACUC)

### 1) 역할

- 동물실험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
- 실험동물의 생산·도입·관리·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
- 동물실험의 원칙에 따른 동물실험 시행 여부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·훈련 등에 대한 지도·감독
-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·감독
-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

\*관련 규정 : 「동물보호법」 제54조(윤리위원회의 기능 등),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 제20조(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·감독 등)

### 2) 법 시행('23.4.27.)으로 동물실험시행기관은,

- 심의 후 감독(Post Approval Monitoring, PAM) 의무 실시
- 위원의 정기 교육 이수
  -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검역본부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함
- 주요내용 ① 동물보호 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 
② 동물 보호·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 
③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 
④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
-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신속 변경심의의 가능
  -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후 위원장 승인으로 변경 가능(법제화)

\*관련 규정 : 「동물보호법」 제51조(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), 제55조(심의 후 감독), 제56조(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), 제57조(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), 「동물보호법」 시행규칙 제36조(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)



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<https://www.animal.go.kr/aec>

###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

Tel : 054)912-0519~0522 Fax : 054)912-0528 E-mail : [loveanimal@korea.kr](mailto:loveanimal@korea.kr)

[www.mafra.go.kr](http://www.mafra.go.kr)

[www.qja.go.kr](http://www.qja.go.kr)

#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제도



 농림축산식품부

 농림축산검역본부

## 01 동물보호법

### 1) 목적

-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보호,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,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2022년 4월 전면개정으로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은 「동물보호법」 제4장 동물실험의 관리 등(제47조~제58조)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
### 2) 주요 개정사항

2022년 4월 전부개정 (101개 조항)	동물학대 행위 등의 구체화, <b>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및 지원</b> ,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, 동물 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, <b>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도 도입</b> , <b>심의 후 감독 의무화</b> ,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
2011년 8월 전부개정 (47개 조항)	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·운영,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·보호조치의 강화, <b>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·감독 강화</b> , <b>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</b> ,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 강화
2007년 1월 전부개정 (26개 조항)	<b>동물의 등록제 도입</b> ,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 강화, <b>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구체화</b> , 동물의 운송에 따른 보호규정 마련, <b>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</b> ,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사관제 도입,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
1991년 5월 제정 (12개 조항)	동물을 적정하게 보호·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<b>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동물보호정신을 함양</b>

## 02 전임수의사 제도

### 1) 전임수의사란?

동물실험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는, **실험동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의사**입니다.

### 2) 전임수의사가 꼭 있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은?

-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(실험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)
- 실험동물의 감각능력, 지각능력, 고통등급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기관

### 3) 전임수의사 역할



#### 동물 진료와 기술지원

수술, 검진, 예방접종 등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, 진단, 처치 및 치료 등을 담당합니다.



#### 동물실험시설 관리 감독

실험동물이 실험 전후 사육·관리되는 동물실험시설이 동물에게 적정한 환경으로 유지되게끔 시설 전반을 관리 감독합니다.



#### 동물복지와 윤리

동물실험 3R원칙에 따라 동물이 윤리적으로 사용되게끔 관리감독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 합니다.



#### 교육과 훈련

동물실험 수행자들에게 실험법, 동물을 다루는 법 등을 교육하고 훈련시켜, 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합니다.



### 4) 전임수의사 자격요건

-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
-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
-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(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)

### 5)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자격교육 주요내용

- ① 동물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
- ② 실험동물의 보호·복지에 관한 사항
- ③ 실험동물의 사육·관리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- ④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\* 관련 규정 : 「동물보호법」 제48조(전임수의사),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(전임수의사), 「동물보호법」 시행규칙 제29조(전임수의사의 교육)

## 03 유실·유기동물, 봉사동물 실험 금지

- 유실·유기동물 및 봉사동물\*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

\* 장애인보조견, 인명구조견, 경찰견, 군견, 폭발물탐지견 등

- 다만, 2024년 4월부터는 예외 적용

-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인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을 선발하거나 훈련방식을 연구하는 경우로써 국가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경우

\* 관련 규정 : 「동물보호법」 제49조(동물실험의 금지 등), 「동물보호법」 시행령 제3조(봉사동물의 범위)